

칠판 앞에선 선생님, 급여 앞에선 '乙'..임금체불 학원강사의 눈물

具 공주경 기자 | Ⓛ 승인 2025.10.11 15:00 | □ 호수 2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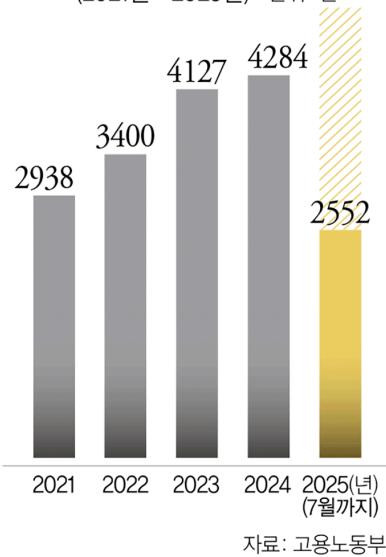
서울 강남종로학원 대치관에서 수강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photo 뉴스1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1일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5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업종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학원'. 올해 추가된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 사업주 60대 A씨의 이름 옆에는 약 3500만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예술학원 사업주 60대 B씨 옆에는 약 3700만원의 체불액이 적혀 있었다.

사실 학원가에서의 임금체불은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닌, 만성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교육서비스업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체불사건수는 2021년 2938건, 2022년 3400건, 2023년 4127건, 2024년 42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연도별 교육서비스업 임금체불 현황

(2021년~2025년) 단위: 건



자료: 고용노동부

학원 업계 지탱하는 ‘가짜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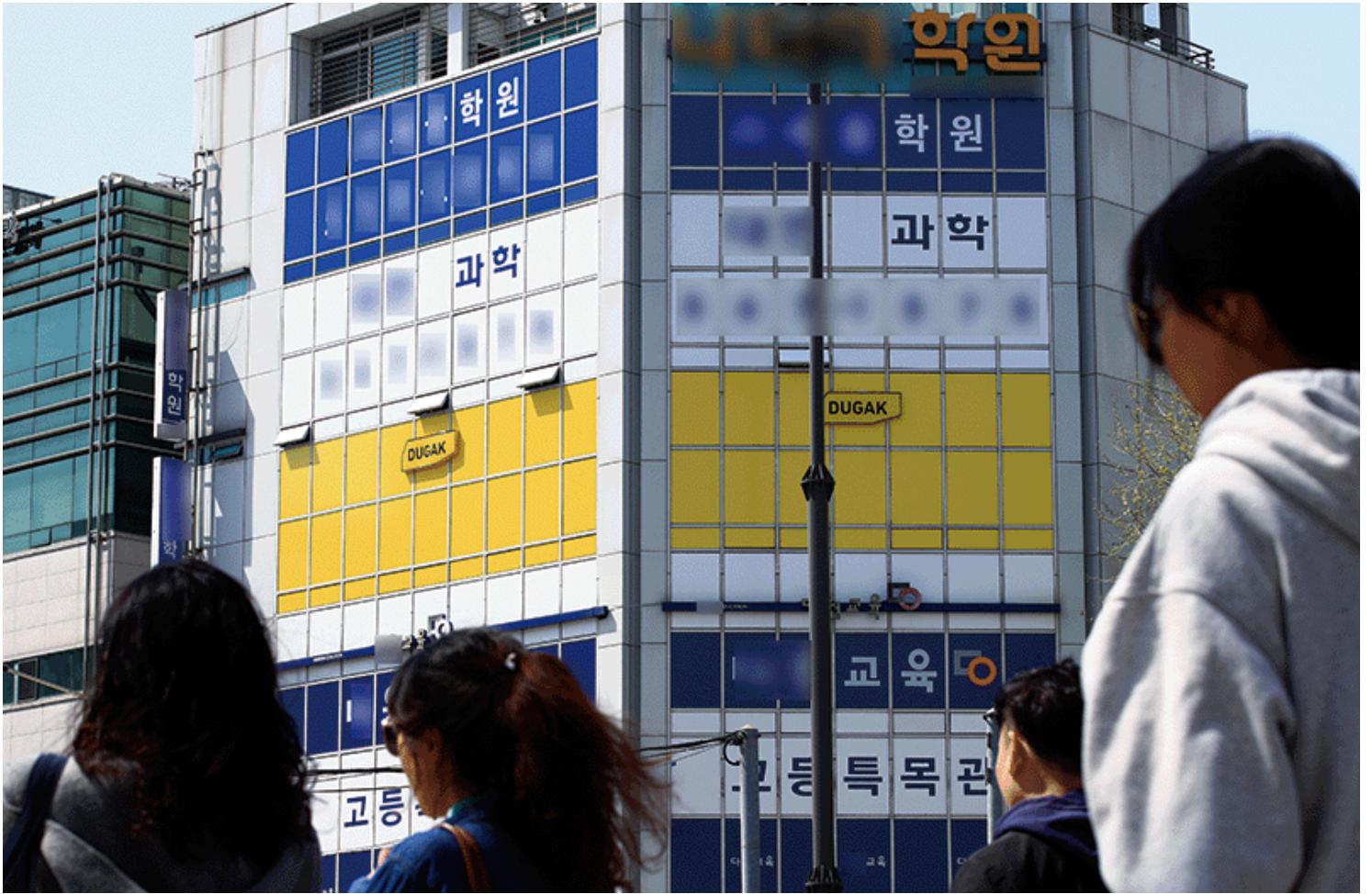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의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교습소·공부방·교습학원은 12만8573곳에 달한다. 전국의 커피음료점(9만4947곳)보다 많은 숫자다. 카페보다 많은 학원을 지탱하는 사람들은 바로 ‘학원강사’들이다. 하지만 학원강사들이 서 있는 고용 체계는 ‘유리 바닥’처럼 위태롭기만 하다.

실제 상당수 학원 대표자는 강사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고용한다. 이 같은 고용 형태로 인해 학원강사들의 소득세 역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고,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학원강사들이 학원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둔갑한 이른바 ‘가짜 3.3’ 위장 프리랜서들이었던 셈이다.

이 같은 구조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적 환경이 된다. 지난 9월 11일 대전 둔산동에서 학원 조교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최모(27)씨는 “동네의 ‘1타 강사’라 불렸던 영어강사마저 월급을 못 받은 적이 있었다”며 임금체불을 직접 목격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최씨는 “가르치는 학생수를 전부 합하면 200명에 달해 학원이 돈을 꽤 많이 벌었을 텐데도, 원장이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의아했다”며 “그 결과 체불액이 몇천만원으로 불어나 함께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원 규모가 클수록 학원강사들의 임금체불액이 수천만원을 넘기기 일쑤다. 지난 9월 17일 기준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한 종합학원의 체불액은 약 3100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체불액이 1억원을 넘는 학원도 두 곳이나 있었다.

약 10만명의 학원강사들이 모여 있는 한 커뮤니티에도 “월급을 두 달치나 밀리고 전화, 문자, 카톡 등 연락이 두절돼 노동청에 신고했다” “2년 차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지만, 애정이 있어 참고 다녔는데 너무 열받는다” “유독 임금체불이 많은 직군이 학원강사인 것 같다”는 등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가 풍경. photo 뉴스1

퇴직금조차 못 받는 현실

임금뿐 아니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학원강사들의 큰 고민거리다. 학원강사 커뮤니티에서는 “5년이나 일했는데 학원 측에선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3년 일하고 퇴사하는데 학원 사정이 안 좋아서 퇴직금을 당장 못 주겠다고 하는 원장 어떡하죠” 같은 불만이 지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원장이 수시로 바뀌는 학원 업계 특성상, 본의 아니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초·중·고 학생을 상대하는 인천의 한 종합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올해 개인교습소를 차린 장모(30)씨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장씨는 ‘장차 학원을 양도해 주겠다’는 원장의 말만 믿고 10개월쯤 학원강사로 일했는데, 갑자기 원장이 ‘학원이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말을 바꾼 것. 이에 더 이상 학원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장씨가 학원을 나오자 원장은 일정 반경 내 지역에서 학원을 열지 못하는 ‘경업(競業)금지’ 조항을 들고 장씨의 진로를 막았다.

결국 장씨는 “경업금지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지난 6월에야 학원을 나와 교습소를 차렸다. 하지만 이에 따른 퇴직금은 한푼도 건질 수 없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으려면 입사 후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데, 학원을 새로 인수한 원장 밑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근로자성 입증할 수 있어야

부산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 남보리 권리찾기유니온 대의원 역시 학원 업계의 프리랜서 고용 문제를 지적했다. 남씨는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인 학원들이 강사를 프리랜서로 고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원 원장들 사이에 탄탄한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 ‘강사 평판조회’도 아주 쉽게 이뤄지는 편”이라며 “강사가 노동청에 고발이라도 했다 하면 바로 낙인찍히고, 다른 학원에 취업하기조차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결국 학원강사들은 구조적으로 ‘을(乙)’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남씨의 설명이다.

남씨 역시 과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적이 있었다. 그나마 남씨는 매일 시간표와 업무일지를 기록하고 보고해 온 덕분에 이를 증거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해도, ‘근로자성’을 입증한다면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셈이다.

이준명 노무사는 “관건은 노동청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제시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일하고, 지속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성을 입증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학원강사라 하면 흔히 ‘대치동 고액 강사’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현실의 80% 이상은 소규모 학원 강사들”이라며 “학원 업계에서 ‘가짜 3.3’ 프리랜서 고용 형태를 없애거나 최소한 퇴직금과 4대 보험 같은 기본적인 권리만이라도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노동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프리랜서라는 단어가 마치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현행법상 대부분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프리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선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실질적인 노동자로 추정하는 ‘노동자 추정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경 기자 by.jk@chosun.com